

2022년 제2회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록

□ 개 요

- 운영 방식: 서면 자문
- 운영 기간: 2022.12.16.(금)~12.22.(목)
- 시민감사관: 김OO 교수, 문OO 전문위원, 김OO 노무사
- 안건: 한국기계연구원 신고체계 개선(안)

□ 내 용

- 시민감사관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기계연구원 신고 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자 함

구분(과제명)	현행	개선(안)	한국기계연구원 신고체계 개선 방안 (시민감사관 의견 반영)
1. 외부인 대상 홈페이지 신고센터 분리 운영	외부인 대상으로 홈페이지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임직원의 부패행위, 공익침해, 청탁, 채용비리, 갑질 등의 비윤리적 행위와 민원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분리하지 않고 운영 중	<p>(1-1) 권익위의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2021.11)을 준수하여,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른 신고**를 구별하여 외부인 대상 신고창구 운영 *민원(일반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신고(부패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등)</p> <p>(1-2)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른 신고 창구는 아래와 같이 세분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패신고 ② 공익신고 ③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④ 행동강령 위반신고 ⑤ 갑질·채용 비리 신고 	<p><u>권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인 대상 신고 창구를 ‘민원’과 ‘신고’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신고창구 유형을 6가지[부패신고/공익신고/청탁금지법 위반신고/행동강령 위반신고/갑질·채용 비리 신고/기타(이해충돌 신고 등)]로 나누고자 함</u></p> <p><u>아울러 신고창구 운영 전 ‘민원’과 ‘신고’ 창구별로 담당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각 유형별로 설명 등이 신고화면에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u></p>
2. 대국민 청 럽 포 털 (clean.go.kr) 청렴마당 신고창구 연계	(미개설)	(2) 대국민 청렴포털(www.clean.go.kr) 청렴마당 내 한국기계연구원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연구원의 신고제도 개요, 반부패 관련 내규(지침), 부패직원 현황, 청렴도측정결과, 연구원의 청렴활동, 신고(또는 상담) 사례 등 공개	<p><u>대국민 청렴포털(www.clean.go.kr) 청렴마당 내 한국기계연구원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지표 위주로 내용 구성</u></p> <p>- <u>연구원의 ‘신고제도 개요’, ‘반부패 관련 내규(지침)’, ‘부패직원현황’, ‘청렴도측정 결과’, ‘연구원의 청렴활동’, ‘신고(또는 상담) 사례’로 신고창구 메뉴 구성</u></p>

구분(과제명)	현행	개선(안)	한국기계연구원 신고체계 개선 방안 (시민감사관 의견 반영)
			<p>- '신고(또는 상담) 사례' 공개 시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p> <p>아울러 한국기계연구원 홈페이지 내 운영이 미진한 게시판(홈페이지→ 정보공개→ 클린KIMM→ 부패행위자 장제 현황)은 확인하여 보완 예정</p>
3. 게시판 형태의 신고 창구 운영 사례 개선	홈페이지 원클릭신고센터 내 '공개된 신고보기'에 신고내용, 신고자 정보 등이 노출되는 게시판 운영 중	(3)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개편하며 '공개된 신고 보기' 메뉴 삭제	<p>연구원 홈페이지 원클릭신고센터 내 '공개된 신고보기' 메뉴 삭제</p> <p>※ 대국민 청렴포털 내 '신고(또는 상담) 사례' 메뉴 운영 예정</p>
4. 관련 규정 제·개정 검토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요령」 운영 중	<p>(4) 권익위의 표준안***과 내부 규정을 대비하여 미비점 보완</p> <p>***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2022)</p>	<p>① 신고사항 처리기한은 타 기관의 사례(한국연구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연구원 등)를 참고하여 60일로 하고, 연장기간은 30일로 설정</p> <p>② 권익위 표준안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내규(「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요령」)에 추가</p> <p>③ 구조금 지급 근거를 내규에 반영하고,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에 대해 설명하는 조항도 내규에 추가 검토</p> <p>④ 도입하려는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내용 중에, 아래 사항 보완</p>

구분(과제명)	현행	개선(안)	한국기계연구원 신고체계 개선 방안 (시민감사관 의견 반영)
			<p>-“신변보호 조치”는 “경찰과 연계하여 신변 보호 조치가 진행”됨을 추가 설명</p> <p>-“책임감면”의 경우 “책임감면(감경 또는 면제)”으로 표기</p> <p>⑤ 도입하려는 ‘<u>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u>’ 내용 중에, 아래 사항 보완</p> <p>-“신고를 준비하실 때” 항목에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 안내 추가</p>
5.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 안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청렴문화방’을 운영 중	(5) 내부 구성원 대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등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제도를 정리하여 안내	인트라넷 게시판의 ‘청렴문화방’을 통하여, 내부 구성원 대상으로 “ <u>부패행위 등 신고 방법 및 신고자 보호제도</u> ”를 정리하여 안내 하겠음